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

제 8 조 (소집절차)

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단,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기타 법령,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
-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간 사)

이사회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팀장이 되며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4 장 위 원 회

제 13 조 (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

2. 감사위원회
3. 경영위원회
4. ESG경영위원회

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구 성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2. 의 장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.
 3. 소 집
(1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.
(2)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4. 결의방법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
-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의 작성 방법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팀장으로 하며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 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구 성
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

2. 의 장

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,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3. 소 집

(1)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.

(2)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결의방법

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
2.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
3. 외부감사인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4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

③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감사위원회의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회계팀장으로 하며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6 조 (경영위원회)

① 경영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구 성

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2. 의 장

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, 이 경우 다수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3. 소 집

(1) 경영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.

(2) 경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결의방법

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

한다.

- ②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신규사업 및 1,000억 미만 투자에 관한 사항
 - 3.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 - 4.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5.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 사항
 - 6. 지점, 공장, 영업소, 출장소,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
 - 7.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,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8.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
 - 9. 기타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
- ③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④ 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전략담당 임원 또는 팀장으로 하며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7 조 (ESG경영위원회)

- ① ESG경영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구 성

ESG경영위원회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2. 의 장

ESG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.
 - 3. 소 집
 - (1) ESG경영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.
 - (2)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- 4. 결의방법

ESG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ESG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
2.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개정
- ③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이사회 부의사항으로서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
 - (1) 배당
 - (2) 감사
 - (3)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
(일반공모증자, 우리사주발행,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, 단주의 처리포함)
 - (4)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
 - (5)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 - (6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 - (7)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(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, 우선배당율 결정,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)
 - (8) 주식의 소각, 병합 및 분할
 - (9) 회사의 분할, 분할합병, 합병
 - (10) 자기주식의 취득·처분
 - (11) 1,000 억 이상 투자에 관한 사항
 - (12) 상법 제 398 조에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
 - (13) 상법 제 397 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(14) 기타 위원회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
 2. ESG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
 - (1) 그룹사 ESG 관련 정책, 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
 - (2) 환경, 안전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 계획
 - (3) 기타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
- ④ ESG 경영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.
 1. 공정거래관련 법규준수 이행 실태
 2.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이행 실태
 3.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
- ⑤ ESG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제 11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.
- ⑥ ESG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전략/재무담당 임원 또는 팀장으로 하며, 간사는

| (주)효성 | 표 준 명 | 표준번호 | 제정일자 | Page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| 이사회운영규정 | HS-1-9-01-02 | 2021.04.29 | 7/7 |

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